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. 11. 19 선고 2024가단5726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2024. 10. 29.

판결 선고2024. 11. 19.

주 문

1. 피고와 D[생년월일: E]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. 11. 1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제1항 기재 D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 등기소 2023. 11. 14. 접수 제4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1)

이 유

○ 청구의 표시: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○ 적용 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항용남

별지

1) 청구원인을 감안하여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정정한다.